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059

발의연월일: 2022. 12. 21.

발 의 자: 안호영·김승남·신정훈

소병훈 · 위성곤 · 이해식

권인숙 · 김정호 · 윤준병

양경숙 • 윤재갑 • 고영인

김홍걸 • 어기구 • 윤미향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·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에 대한 다양한 조사제도를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 장 또는 시·구·읍·면의 장 등에게 유휴농지 조사,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, 농지대장 작성·정리나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, 농지의 소유·거래·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조사를 할 때 담당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, 농지 등 출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지 소유자 등으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얻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

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·관리를 위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 제54조의4 신설).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4조의4(농지 등에의 출입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장·군수·자 치구구청장 또는 시·구·읍·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(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, 농업 관련 기관 또 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 등의 임직원을 포함 한다)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.

- 1.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
- 2. 제49조제3항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·정리나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
- 3.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·거래·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
-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(이하 이 조에서 "이해관계 인"이라 한다)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해관 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농지 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해당 농지 등에 출입할 수 없다.
- ④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 나 방해하지 못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64조제2항 중 "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"을 "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
- 2.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54조의4(농지 등에의 출입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장·군 |
|--|
| 수·자치구구청장 또는 시·구 ·읍·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는 소속 공무원(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 공사,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 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)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하게 할 수있다. 1.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. 제49조제3항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·정리나 농지 이용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3.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소유·거래·이용 또는 전용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|

제64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해당하는-----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・점유 자 또는 관리인(이하 이 조에 서 "이해관계인"이라 한다)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-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에는 농지 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 로 둘러싸인 해당 농지 등에 출입할 수 없다.
- ④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 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.
-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 여야 한다.

제6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| <u> <신 설></u> | 1.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| 지 아니한 자 |
| <u><신 설></u> | 2.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|
| |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|
| | <u> </u> |
| ③ (생 략) | ③ (현행과 같음) |